



국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직원 ·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메뉴얼

[2015. 3.]



금 천 구

(주차관리과)

목 차

불법주·정차 단속

1. 주·정차 개념	1
2. 주·정차위반 단속대상	2
3. 단속업무 절차	4
4. 단속방향 및 기준	5
5. 단속방법 및 순서	11
6.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	14
7.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부과기준	16
8. 단속공무원 단속시 유의사항	17
9. 단속공무원 근무자세	18
10. 상황별 대처요령	19
11. 방문고객 응대요령	20
12. 부정주차와의 구별	21

주요 민원내용과 답변

<input type="checkbox"/> 주요 민원내용과 답변	22
--	----

주차단속 실무사례(질의·답변)

<input type="checkbox"/> 주차단속 실무사례(질의·답변)	26
<input type="checkbox"/> 주차단속 실무사례(참고사항)	32

부록

<input type="checkbox"/> 서울시 및 자치구 단속부서 전화번호	35
<input type="checkbox"/> 참고 자료 및 관계법령	36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기존의 실적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기획단속으로 단속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주·정차 개념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 함은 운전자가 차로부터 통상의 대화가 가능한 거리를 벗어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함.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주차위반과 정차위반의 구분 요령
 - 운전자 등이 차에 없거나 그 주변에 없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으로 조치
 - 운전자 등이 차에 타고 있거나 그 주변에 있는 경우(통상 대화 가능거리)에는 정차위반으로 조치

□ 견 인(도로교통법 제35조)

-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

☞ 법 제36조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대행 가능

2. 주·정차위반 단속대상

□ 정차 및 주차 금지장소에 정차 또는 주차한 차(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 중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 제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 정차 및 주차의 금지표시는 “황색실선”으로 하여 노변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한다.

□ 주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은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 주차의 금지표시는 “황색점선”으로 하여 노변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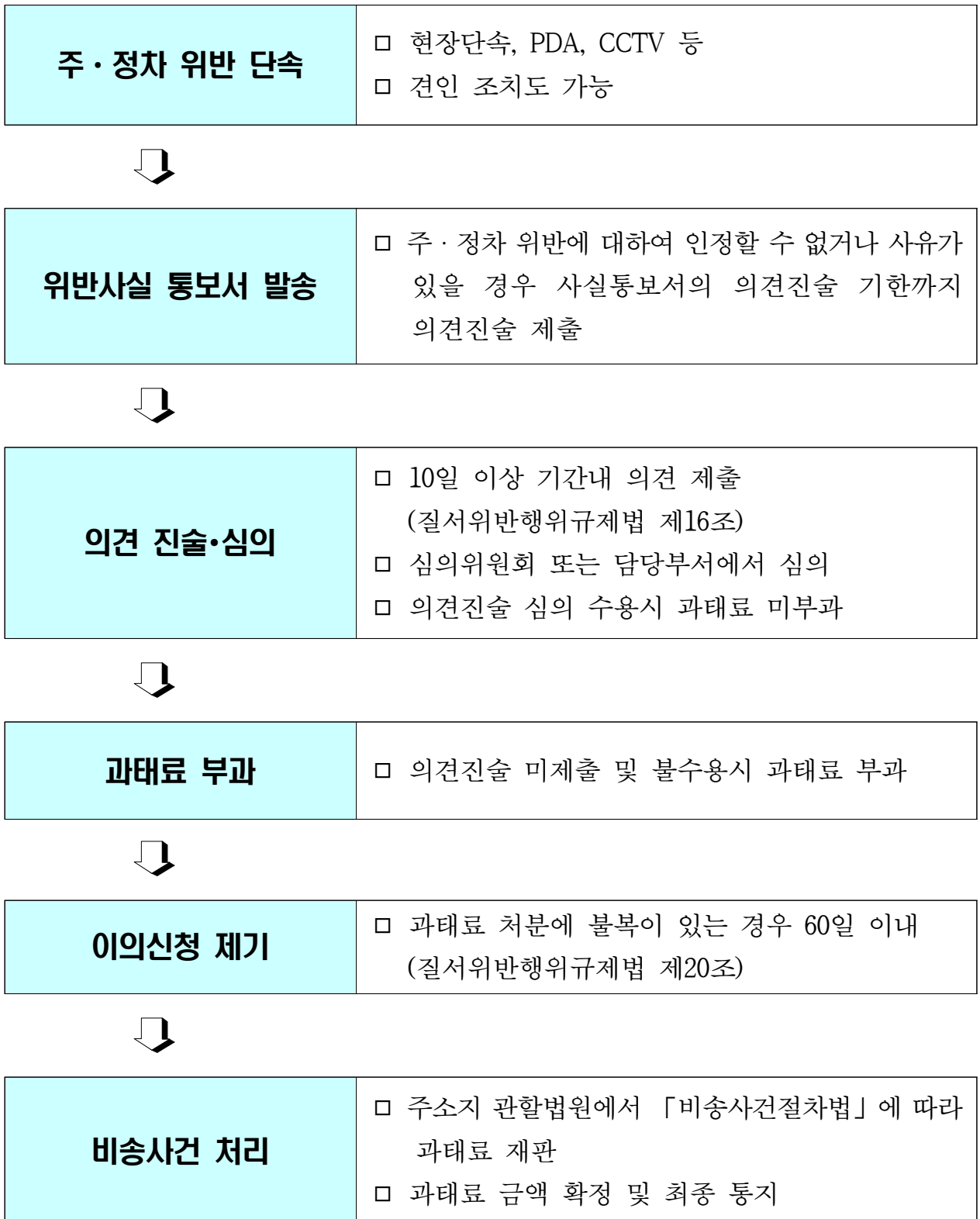
□ 정차 또는 주차방법 및 시간제한 미 준수한 차
[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 또는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1991.7.31)〉

- ◆ 제1조(목적)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상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대상과 법 각 해당 조항의 위임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주차금지장소) 법 제32조 제6호 및 법 제3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금지장소를 교통안전표지로 갈음한다.

3. 단속업무 절차



4. 단속방향 및 기준

□ 시·자치구 간 단속지역 구분

구 분	원 칙	예 외
서울시	- 왕복 6차로이상 주요 간선도로 위주 단속	- 민원사항은 지역구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 해소
자치구	- 지선 및 이면도로(6차로 미만) 등 관내 모든 지역	- 위반차량이 시 단속구간과 구 단속 구간에 근접해서 혼재하는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구분 없이 일괄 단속 - 단속이 미흡한 취약구간에는 시 또는 시(구)·경찰 합동단속 실시

□ 시간대별 단속기준

구 분	원 칙	비 고
평 일	- 단속시간 : 07:00~22:00 ·출퇴근시간(07:30~09:00/17:30~20:00)에 혼잡지역 위주 집중단속 ·어린이보호구역은 개학기 및 등하교시간대 (08:00~09:00/ 12:00~16:00) 집중 단속	- 심야 시간 및 폭우, 폭설시에는 계도위주 단속
토·공휴일	· 시민불편 해소 위주의 계도 및 단속 (횡단보도, 인도, 주차장 진입로 차단 차량)	

□ 지역(대상)별 단속기준

구 분	대 상	단속방법
중점단속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위(차량일부가 보도 침범한 경우 포함)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 자전거도로, 버스전용차로 - 소방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 - 불법주정차 상습 취약구간 - 번호판 가림 등 압채주차 차량 -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금지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횡단보도(10m 이내) · 버스정류장(10m 이내) · 건물목(10m 이내) · 안전지대(10m 이내) · 터널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 소방기계기구방화물통소화전(5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집중단속 실시 - 견인조치 병행
일반단속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단속지역 외 지역의 불법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단속 실시 - 교통소통 위주 단속 (필요시 견인조치)
특별단속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주변, 보행전용거리 주변 등 시간과 범위를 정하여 특별단속이 필요한 지역 -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를 위해 단속이 필요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전 예방계도 강화 - 단속 및 견인조치
단속완화 지역(탄력적 단속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주변 - 생계형차량(1.5톤 이하 화물차량) - 장애인차량(장애인 직접 운전 또는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음식점 주변 점심시간대(11:3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도위주 관리 (단, 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전용차로 등 중점단속구간에 해당되는 경우는 단속 조치)

□ 중점단속지역 단속 강화

○ CCTV 사각지대 등

- 번호판 가림 차량, CCTV 바로 아래 주·정차한 차량, 앞차와 밀착 주차하여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주·정차한 차량 등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번호판가림 차량 30만원 과태료 부과 또는 관할경찰서 고발(100만원 이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관내 45개소) 과태료 상향 조정

※ 승용차 40,000원 → 80,000원, 승합차 50,000원 → 90,000원

※ 8시부터 20시까지 적용, 그 외 시간은 기타 구간 과태료와 같은 금액

○ 대형마트, 음식점 등 교통유발시설물 주변

- 대형마트, 주말 음식점 주변 등 교통불편 유발시설 중점 단속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중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단속
- CCTV 신규 설치 시 사전안내 및 계도 우선 원칙 적용

○ 소방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

관련사례

- ‘15.01.10(토) 의정부시 『대봉그린타운 아파트』 화재

- ‘15.01.14(수) 『불키우는 불법주차』
- 조선일보 보도

- ‘15.01.03(토) 『불법주차 단속 강화』
- 국민안전처장관 방문시 지시



- 그 외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버스정류소, 택시승차장 등 보행자 안전과 교통흐름에 직접 방해가 되는 지역 우선 단속

□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앞 단속완화 기준

- 단속완화 시간 : 11:30 ~ 14:00
- 소규모 음식점 : 왕복 6차선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 단속방법
 -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1개 차로에 주차를 허용해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우) 내에서 단속 완화
 - 소통,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민불편 큰 지역은 계도 후 단속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은 완화대상에서 제외
 - 점심시간대 순찰을 강화하여 소통방해 차량에 대해서 적극 계도

□ 생계형차량(1.5톤 이하 화물차량) 단속유예

- 관련근거 : 서울시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5조(소형화물차 단속유예구간)
- 단속유예시간 : 24시간(7시~9시 18시~20시 제외)
- 단속유예구간 : 81개 지역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은 완화대상에서 제외

□ 대상차량별 단속기준

유형별	대 상	단속방법	비 고
일반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유형의 차량을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도 또는 단속 ※견인조치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TV(고정식, 차량탐재식) 단속의 경우 별도
생계형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차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택배, 6인승 콜벤 사업용 차량 포함)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차량 ※영업용 택시, 관광버스, 공공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계도 후 단속 ※ 견인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1회 30분간 주차 허용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12-1조(2012.9.21)
장애인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표지판(주차가능)이 부착된 차량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계도 후 단속 ※ 견인 지양 단속에 따른 의견 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공공용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운행되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도 또는 단속 단속에 따른 의견 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수행을 위해 사전 협조 요청시 의견제출시증빙자료(공문) 제출시
기타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 영사, 군용차량, 선거기간 중 선거지원차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도 또는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제출시증빙자료(공문) 제출시

□ 견인 단속기준

- 중점단속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차량은 단속 후 즉시 견인 조치
 - ※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업체 연락 조치
- 주차장 진입도로,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에 해당되는 경우 단속 후 즉시 견인조치 가능
- 견인된 차량에 대한 견인안내서비스
 - 견인된 차량의 차주에게 보관소 입고 후 견인보관소에서 30분 이내 견인사실 안내 (SMS 또는 전화)
-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견인 조치 자제
 - 견인차량(언더리프트 차량)은 반드시 안전조치(안전로프 설치) 후 이동
 -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장치 연결 후 차주가 나타난 경우
 -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장치를 연결하고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하였다더라도 출발 전에 차주가 나타났을 때에는 견인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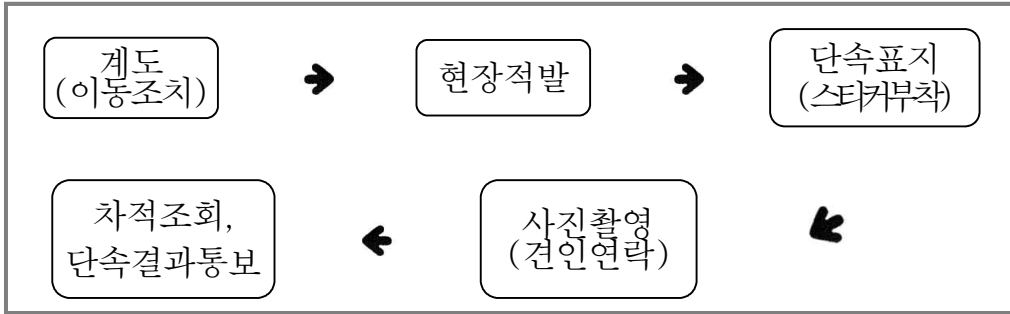
견인우선대상 차량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1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주·정차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
- 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내에 불법주·정차한 차량

5. 단속방법 및 순서

□ PDA단속(인력, 차량)

○ 단속절차



○ 단속방법

- 교통안전 및 소통 원활 여부, 주차허용장소 지정 여부, 주정차 또는 주차금지장소 여부 선행 검토
- 운전자가 있으면 이동조치시키고, 없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차(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 표지 작성·부착
 - ※ 차량번호, 위반일시(월, 일, 시, 분까지 기재), 위반장소(동명, 도로명, ○○빌딩), 위반내용, 단속조,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기재 또는 확인
- 당해 차의 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 촬영
- 사진 촬영시에는 당해 차의 “차량번호” 및 “단속스티커”가 반드시 나오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당해 차안에 탑승자가 없고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와 주변도로의 배경 사진도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 일렬주차로 차량번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운전석쪽 출입문 유리에 부착하고 사진 2회 촬영
- 단속을 마치고 차주가 나타나 단속에 항의하는 경우에는 교통흐름 개선과 안전을 위한 단속의 정당성에 대해 이해시킴
 - ※ 차주와 다투지 말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안내와 설득

□ CCTV 단속(고정식, 차량탐재식)

○ 단속절차



○ 고정식 CCTV

- 운영시간
- 서울시 : 평일 07:00~22:00, 토·공휴일 단속자제 원칙
 - ※ 다만, 토·공휴일 다중이용시설주변에 대해서는 실시 가능
- 자치구 : 교통혼잡 또는 민원다발 지역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 적발방법(서울시) : 단속시작 후 5분 초과시(시흥대로)
- 적발방법(금천구) : 단속시작 후 10분 초과시
- 단속시간(2회 촬영) : 최초번호판사진, 차량사진

○ 차량 탐재식 CCTV

- 운영시간(서울시) : 07:00~22:00
- 운영시간(금천구) : 09:00~17:00
-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5분 초과시 단속완료 촬영
- 단속시간(2회 촬영) : 최초번호판사진, 차량사진

□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고정형, 이동형) 시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이동 요청
- 서비스 시기 : 2015년부터
- 서비스 대상 : 관내 운행하는 차량 중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자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비치된 신청서 작성

□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방법

- 서비스 취지 : CCTV 무인단속 구간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단속 구간임을 안내하여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
- 문자 알림 서비스는 행정행위와는 무관한 부가적인 서비스 이므로 문자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이 실시 됨

□ 단속순서(순회 단속)

- 일정구간의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단속(도로의 모퉁이부터 우선 실시)
- 교통량이 많은 도로 순으로 단속
- 대로부터 소로로 단속
- 중점단속구역→특별단속구역→일반단속구역 순으로 단속
- 생계형차량(1.5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변상황을 확인한 후 계도·단속

□ 민원신청에 의한 단속 기준

- 절차 : 현장확인→운전자에게 차량이동 통보(반드시)→단속→견인요청(필요시)→민원인에게 결과통보
-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을 분명히 하여 현장 확인과 단속원의 판단에 의해 실시 후 민원인에게 결과통보(보복성 민원에 대하여는 제외)

6.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

□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불법주·정차 단속 후 10일 이내 사전통지서 발송 준수(자진납부기간 20일)
- 사전통지서 반송분, 렌트카 등 실제 차량운행자에 한하여 1회 의견진술 기간(10일) 재부여 가능

□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50% 감경을 원칙)
※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불가

감경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과태료 자진납부시 추가 감경 가능

- ◆ 본 감경제도에 따라 50% 감경한 2만원(4만원×0.5)
- ◆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 감경(2만원×0.2=4천원)을 적용하여 감액된 최종금액 1만 6천원을 의견제출기간 내에 완납하면 당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종료

- 납부지연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 (납기경과 5%, 납기 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 의견진술 처리기준(도로교통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입,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 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거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7.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부과기준

□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차 종	구 분	기본금액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건설기계		5만원	6만원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4만원	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시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 부과(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1만원씩 추가)

□ 차량 견인료(주·정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2.5톤 미만	2.5톤~6.5톤 미만	6.5톤~10톤 미만	10톤 이상
40,000원	46,000원	66,000원	115,000원

○ 피견인차량 보관료(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 6.5톤 미만 : 30분당 700원
- 6.5톤 이상 : 30분당 1,200원

※ 1회 최고 50만원

8. 단속공무원 단속시 유의사항

- 주차허용장소로 지정된 구간은 허용장소 지정내용에 따라 단속을 할 수 없으므로 우선 단속대상 지역인지 확인하여 단속하여야 함
 - 주차허용장소 지정유형은 일반도로, 전통시장 주변(설·추석 기간),소형화물차 단속유예구간 등으로 유형별 지정개소별 허용구간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단속 활동(허용장소에서 단속하여 민원발생시 해명할 방법이 없음)
 - 특히, 소형화물차 주차유예구간은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시(2012.9.19)하여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하여 해당 지역을 숙지하여야 하며 허용장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최근 자료를 활용

- 단속시 차량 조수석 또는 뒷자리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도·단속

- 트렁크를 열고 짐을 상·하차시 주변상황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도·단속

- 소방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 계도 및 단속

- 단속관련 주요 불만사례
 - 시동과 비상등이 켜진 상태인데 주위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단속
 - 단속원이 갑자기 나타나 주위도 살펴보지 않고 단속 후 재빠르게 현장 이동
 - 단속되어 단속원을 만났는데 무조건 구청에 의견진술하라고 종용(의견진술로 처리가 되지 않는 사안임에도 의견진술만을 유도하여 민원 야기)

9. 단속공무원 근무자세

□ 단정한 용모

- 단속공무원은 단정한 용모 유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어야 하며 근무중에 규정된 제복 또는 명찰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공직자다운 태도(언어, 말씨)

- 말하는 태도(화법)는 단속원이 가진 내면적인 인격에서 우러나는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여 첫 인상을 좋게 하여야 한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분은 공직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한다.

□ 대화요령(논리정연한 화법)

- 상대방의 이야기는 진지하고 끈기있게 경청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짧은 시간에 요령있게 이야기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고 중점사항만 이야기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야기 한다.
 - 추상적인 동정은 하지 않는다.

□ 단속규정 숙지(위반사항 법규적용)

- 위반자와 마찰시 단속근거 등을 명쾌히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대화가 짧게 되고, 항의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 단속규정 적용은 일관성 있고 형평에 맞게 적용하여야 마찰을 줄일 수 있다.

□ 단속공무원의 행동요령

- 단속 활동시에는 2인 1조로 함께 행동한다.
- 이동시에는 절도있게 행동하고 제복, 모자, 완장을 착용한 상태로 노상에서 휴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휴식시에는 가능한 한 공공기관 또는 지정된 장소(주민센터, 교통초소 등)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며, 휴식시에는 반드시 완장, 모자를 벗도록 한다

10. 상황별 대처요령

□ 욕설, 희롱에 대하여

- 위반차량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욕설, 희롱을 받을 때에는 즉각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경청후 단속사항에 대해 이해시키도록 노력한다.
- 욕설이 있더라도 욕설로 대응하지 않는 자신조정법이 필요하다.
- 폭언 또는 희롱정도가 심해 단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면 우선 PDA 또는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하고 단속을 중단한 채 가까운 경찰서나 사무실에 도움을 청한다.

□ 공갈, 협박(위협)에 대하여

- 공갈, 협박시에는 위반 사실을 기록한 후 우선 차량번호를 촬영한다.
-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기억한다.
- 경찰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시야에 있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 폭력에 대하여

- 폭력행위가 압박되어지는 상황이거나 폭력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동하여 주위의 경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적극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 다중의 위협 또는 흥기사용 가능시에도 역시 신속히 이동 후 112에 신고하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조치한다.
- 가능한 한 폭력이 발생되기 전에 신속히 이동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유혹(회유)에 대하여

- 단속 활동시에는 위반자로부터 적당히 잘 봐 달라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 단속원은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공무원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한다.

11. 방문고객 응대요령

- 호칭 및 인사

- ▶ 고객님!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어르신” 등)

- 응대요령



우수한 서비스를 위한 4가지 기본 행동

1. 고객의 눈을 보라.
2. 고객을 향해 미소 지어라.
3. 고객과 대화를 나누어라.
4. 고객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5가지 단계

1.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며 듣는 것,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 것.
2. “응, 그래, 맞아” 등의 맞장구를 치며 듣는 체하는 것.
3. 선택적 청취로 대화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듣는 것.
4. 신중한 경청으로 상대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며 듣는 것.
5.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공감적 경청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12. 부정주차와의 구별

□ 부정주차의 의미(주차장법 제8조의2)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적법한 주차행위에 해당되나 주차장법상으로는 주차위반에 해당되는 주차행위로 주차구획 지정을 받지 않은 차량이 임의로 타인의 주차구획에 주차하거나 주차요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차량

□ 관련 법조항

- 단속주체 : 주차장법 제8조 제1항(관리위탁 받은 자)
-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 주차행위제한 등)
- 주차요금 및 부정주차 가산금 징수근거

□ 부정주차 차량의 단속대상 및 요령

- 부정주차 단속대상
 -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부정주차의 식별 :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에 지정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차량은 모두 부정주차라고 볼 수 있으며, 주간시간대에 외부 진입차량의 시간주차를 허용하는 지역에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차량도 부정주차 행위에 해당된다.(차창에 부착된 표시로 확인)

주요 민원내용과 답변

❶ 비상시(급체,전화통화)등의 이유로 비상등을 켜고 5분 정도 지나서 나와보니 단속이 되었다. 지나친 단속이 아니냐?

☞ 단속원은 개별 차량이 왜 불법주차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단속을 한다.

- 주차금지지역에 차량을 주차시킨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5분 정도면 정차이므로 주차가 아니라고들 항의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떨어져 즉시 출발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고 본다. 따라서,
- 주차금지표지판 설치구간
- 다른 차량의 통행지장 초래 시에는 단속이 된다.

❷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일반차량인데 주차단속 되었다.

☞ 위급시라고 무조건적 차량 방치는 용납될 수 없다.

주차공간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앞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견진술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최소사유로 참작이 가능할 수 있다.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자료(해당 병원장 발행의 입원 또는 응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❸ 장애인 차량은 단속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 장애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나 불법주차를 허용할 시 다른 차량에 대한 단속근거 상실 및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장애인 여러분의 협조를 바랄 뿐이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걸어 다니는데 불편이 있어 위반장소에 세우지 않고는 안 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 증명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참작이 가능하다.

④ 일부 차량(외제차보다 상대적으로 싼 국산차량 등) 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단속시 차주가 즉시 이동할 것을 약속한 경우나 차량을 이동 하였다가 단속원이 지나가면 다시 주차하는 경우

· 단속 당시 차량이 없었는데 단속 후 주차하는 경우

⑤ 집 앞이 공사 중으로 인해 주차금지지역에 세웠더니 주차 위반 단속을 당했다. 단속에 급급한 졸속행정 아니냐?

☞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급공사는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공고하므로 주민들의 협조가 요구된다.

☞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무조건적 불법행위를 용납한다면 바른 의식,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대법원에서도 공익을 위한 공사에 있어 주변 주민의 조그만 불편은 인내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⑥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적한 이면도로에 주차시켜 놓았는데 단속을 당했다. 단속근거는 무엇이며 과잉단속 아니냐?

☞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적한 곳이란 차소유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차량은 시간대, 요일별, 계절에 따라 흐름이 변하는 것이 속성인 만큼 주차시 한적한 상태가 계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 한적한 곳일지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금지지역 또는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이면도로의 구획선 밖에 주차했다면 그것은 단속의 대상이 된다.

⑦ 우리 가게 앞이다. 가게 문을 열기위해 차를 세운 사이에 단속을 당했다. 왜 단속하느냐?

☞ 우리 집, 우리 가게 앞이라고 나의 전용공간이 아니다. 도로는 개인의 목적보다 공적인 사용이 우선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면도로에서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이면 본인의 가게 앞이라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를 개인이 마음대로 점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짜 주차의식은 사라져야 한다.

8 슈퍼(편의점) 앞에서 짐 신고 내리기 위해 주차시켰는데 단속 당했다.

☞ 타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물건을 신고 내리기 위해 잠깐 동안 차를 세우는 것은 사실상 구에서도 서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악용, 자기 가게 앞이라고 불법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준다면 단속을 강화 할 수밖에 없다.

9 한밤중과 새벽에도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뭐냐?

☞ 단속은 24시간 가능하나

☞ 심야와 새벽시간대에 통행장애 발생과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면 불가피하게 단속을 실시하며

☞ 특히, 화재진압을 위한 좁은 도로와 소방도로는 24시간 지속적 단속이 불가피하다.

10 잠깐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 보도 위 또는 객관적 판단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주·정차시 확인 단속 대상이 아니며 즉시 단속 대상이다.

11 공무수행 중인 관용차인데 단속을 해야 하나?

☞ 관용차량도 당연히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주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앞, 뒤차만 단속하고 외형상 관용차임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그 차만 빼놓을 경우 단속 형평성의 이의를 제기한다,

☞ 부득이한 공무수행 중인 경우(과태료부과 면제협조 요청)는 기관장의 의사를 공문서 형식을 갖춰 협조를 요하여야 한다.

12 아무 규제표시도 없는데 왜 단속하느냐?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1호), 이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는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고 있다.

☞ 특히, 주차장 출입구나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은 통행에 장애가 되므로 단속이 불가피하다(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11조)

13 건물에 잠깐 들렀다가 5분후에 나와보니 견인을 해갔다. 예고도 없이 견인할 수 있는 규정과 이유는 무엇인가?

☞ 견인목적은 교통장애물을 제거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데 있기 때문에 예고나 경고가 없다. 이러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5조와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정해져 있으며 대상지역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정류장, 보도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된다. 또한, 도로폭이 20m 미만 도로라도 노선버스 운행 도로와 상습불법주차지역(기사식당, 음식점, 카센터 등)과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 차량은 견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문화시민으로서 본인은 물론 남에게도 불편을 주는 불법주차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차단속 실무사례 (질의 · 답변)

❶ 같은 장소에서 수 일 동안 불법주차하고 있을 때 과태료 반복 부과가능여부

-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 행위가 성립될 때마다 부과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1만원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
- ☞ 주차후 이동하였다가 같은 장소로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같은 일자내에서라도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주차 후 이동하지 않고 계속하여 머무는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수 일이 경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할 수는 없고 기본금액에 1만원을 더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 주차위반 상태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견인을 하고 견인할 수도 없는 위치에서 장시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장기 방치차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❷ 주한외교관의 불법주정차차량 견인가능 여부

- ☞ 외교차량의 견인은 외교관의 재산을 억류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공관의 수송 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 위반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 견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교통을 심하게 방해하거나 주민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불가피하게 견인하는 경우에는 견인비용 및 보관료는 부과하지 않는 기존 방안을 계속 유지한다.

❸ 사회복지요원의 주차단속권한 유무관련 참고사항

- ☞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도록 할 수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간을 준 뒤 시장 등(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요원이 주차위반 차량에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 부착 및 증거사진 촬영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행 법규상 공무원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이 단독으로 주정차 위반자에게 이동을 명하거나 위반차량 견인지시를 할 수는 없다.

☞ 단속부서에서는 사회복지요원만의 단속조 편성은 지양하고 공무원과 사회복지요원을 활용하되 주차단속조를 양 인력간에 혼합 편성하여 단속함으로써 단속권한 유무와 관련한 시비를 예방하여야 한다.

④ 단속공무원이 견인대행법인 차량 등에 송신(연락)하는 것의 적법성여부

☞ 단속공무원이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모든 위반차량에 대해 예외없이 신속한 견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그러한 조치를 위해 단속공무원이 견인대행법인이나 견인차량에 전화, 무전기 등과 같은 유·무선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지시하는 것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방편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단속공무원이 견인대행법인 등에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지시를 함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⑤ 견인표지 미설치 장소에서의 견인가능 여부

☞ 견인지역 표지는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를 견인하는 지역임을 알리는 보조표지으로써 모든 견인지역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도로의 여건이나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주정차위반차량이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견인지역 표시가 없더라도 견인할 수 있다.

☞ 주정차금지장소나 주차금지장소가 아닌 이면도로 등에서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량, 이열주차 차량, 편도1차선 도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고 있는 차량, 주정차 금지 장소나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이 가능하다.

⑥ 사유지인 도로위 주차단속 가능여부

☞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서는 동법상의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서는 이러한 도로위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도법 제15조에서는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을 사도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유지상 도로도 사용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따라서 사유지상 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단속이 가능하다.

⑦ 주차위반단속예고제를 하지 않는 이유

☞ 단속을 예고하는 제도는 종전에 일부 구에서 과잉단속의 오해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예방하고자 이면도로 등의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5~10분간 계도 후 불응시 단속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보았으나 본래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동일한 법규 위반 사안에 대하여 예고시간내의 주차위반은 허용하고 예고 시간 경과시에는 단속함으로써 법규적용상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 하고,

☞ 운전자들이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잠시 동안의 주차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하여 단속예고제를 시행하는 도로의 주차 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98년부터 모든 구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서울시에 서도 단속예고제를 미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실정이다.

⑧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단속 가능여부

☞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고 해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규는 없으므로 단속이 가능하나 가급적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든 일반차량이든 간에 주차 위반한 사실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로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3.12.31.)으로 2004.5.1일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가능

⑨ 지하차도의 천장(지붕)이 되는 도로의 바닥면에 주차한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33조 “다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차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

☞ 다리라 함은 개천이나 강의 양쪽 언덕사이에 나무, 돌, 콘크리트 따위로 가로질러 만든 길로써 지하차도의 천장 위는 “다리 위”로 볼 수 없다.

⑩ 도로에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승차한 상태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을시 단속대상인지 여부

☞ 도로교통법제2조 제24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를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는 상태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제25호에 의하면 “정차”를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차위반 단속은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고 정차 위반 단속은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며 주차금지 구역에서는 5분 동안 이동지시를 하여도 불응할 경우 그 이후 단속이 가능함. 그리고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만 탑승해 있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

⑪ 사유지에 걸친 차량 단속여부

☞ 사유지에 대한 단속방법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 규정이 없고 관행적으로 사유지내에 해당 위반차량이 1/2이상 걸친 경우 또는 차량의 일부(바퀴 1개)라도 사유지에 걸친 경우에는 단속을 못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인에게 답변을 하는 등 혼란이 발생되고 있어 도로교통법은 도로(인도, 차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단속시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어느 정도 걸쳐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도로상 주정차금지구역 또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단속(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 표지부착)을 실시할 수 있음

⑫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에 의거 부과하고 있는바 이륜자동차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륜자동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안은 이륜차 등에 대한 주차장(보관소) 확보 문제와 견인방법, 견인요금 등 제반사항을 복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 따라서 이륜자동차가 인도상에 불법주차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차도에 불법 주차할 경우에는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단속추진

⑬ 주차관리원이 상주하는 노상공영주차장 또는 주차금지구역내에 번호판이 없는 부정(불법)주차차량이 주차한 경우 주차단속 공무원이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에서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단속공무원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한도 안에서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번호판의 부착여부와는 상관 없이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지시가 가능함

☞ 다만, 사전에 자동차의 차대번호로 자동차번호와 소유주를 조회하여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지시 할 때 사전에 자동차번호와 차적조회 내용을 차량에 견고하게 표시 하도록 하며, 견인보관소에서 번호판이 없는 동차량을 받아 주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방치차량 담당부서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법 절차가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 없음

⑭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에 의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노면 포함)표지가 설치된 후, 각종 공사 등 도로여건의 변화로 노면표시(황색선)가 훼손되어 있을 경우 주차단속 가능여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써, (별표6) 규제표지 나목 개별기준에 따라 주·정차 표지 등 설치기준 및 장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주·정차금지표지와 노면표시(황색선)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금지구역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단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정차금지표지는 기준대로 설치되어 있으나 일시적으로 노면표시(황색선)가 훼손되었다면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⑮ 단속공무원(또는 경찰)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임명(위촉장 또는 계도 요원증 발급, 자치단체 명의 단속장비 착용 등)한 아파트 관리원 등 일반사인(私人)에게 주차질서 계도(자치단체 명의의 경고장 부착, 사전연락 이동요구 등)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이 현행법령상 가능한지 여부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의1항(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을 살펴보면 교통 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정차단속을 위하여 도지사나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이 주·정차위반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과태료부과대상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그 표지가 부착된 사진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으로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법령상 일반사인(私人)에게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질서계도 및 단속권한 부여는 인근 주민들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단속시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함

⑯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항에 시장 등이 견인 차량보관소에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도난신고된 차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외규정이 없어 민원해결이 곤란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과태료부과 예외규정(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관계법령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이 이치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등이 도난신고증명서 등을 제출 할 때에는 과태료·보관료·견인료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차단속 실무사례 (참고사항)

	<p>1) 간선도로(시흥대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주차시 불법주차로 견인대상</p>
	<p>2) 주차금지표지판(견인지역 병행)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 주차는 불법주차로 단속 또는 견인대상</p> <p>※ 특히 규제표지판(주차금지 또는 주정차금지), 노면표지(황색선)가 있는 경우 특별히 견인표지판(주표지 보완-보조표지)이 없더라도 견인 가능</p>
	<p>3) 도로상 주차금지구역에 주차 한 차량은 불법주차로 단속대상</p> <p>※ 중앙선이 있는 이면도로(골목 길)의 경우 주차금지 등 규제가 승인된 도로로 주차금지(황색선)내 주차뿐만 아니라 중앙선침범의 원인을 제공 하는 경우 불법주차로 견인대상</p>
	<p>4) 주차허용표지판이 있는 경우 지정된 시간의 경우는 주차가 허용되므로 불법주차 대상이 아니고 허용된 시간의 차량만 불법주차로 단속대상</p>



5) 주차선 및 황색선이 지워진 경우라도 무단주차시 불법 주차로 탄력적으로 단속대상

※ 주정차금지표지는 기존대로 설치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노면 표지(황색선)가 훼손되었다면 도로여건을 감안 탄력적 단속



6) 보행공간에 무단주차시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로 견인대상



7) 황색선은 없으나 주차금지표지판이 있는 도로의 경우 불법 주차로 단속 가능

※ 노면(황색선)또는 표지판(주차 금지) 중 어느 하나라도 규제 표지가 있는 경우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임



8) 각종 도로공사 등으로 주차금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노면 규제표시인 황색선이 일부 지워진 지역이라도 무단주차시 불법주차로 탄력적 단속 대상



9) 노면표시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주차
단속요령

※ 차주 자진이동토록 계도



10) 노면표시 있는 이면도로 주정차 단
속요령

※ 견인요청 민원이라도 타 차량의
진출을 막는 경우가 아니면 견인지양

※ 도로여건을 감안 탄력적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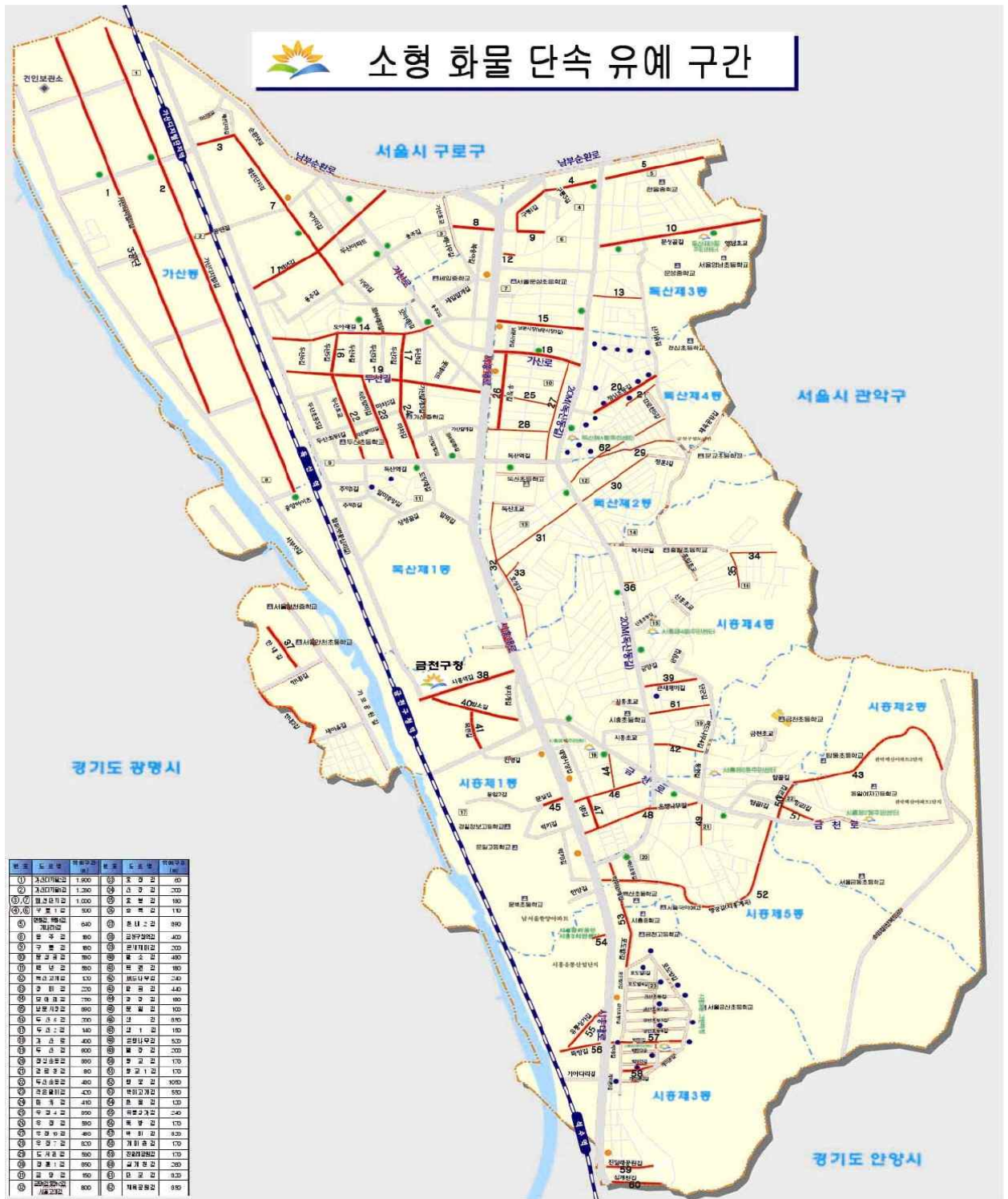
서울시 및 자치구 단속부서 전화번호

기관별	부 서	전화번호	비고(관할지역)
서울시	동부지역대	2282-2235	강남, 강동, 송파
	서부지역대	725-9708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남부지역대	529-7166	관악, 금천, 동작, 서초
	북부지역대	2231-2730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성동지역대	2291-1410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서지역대	761-5340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종로구	주차관리과	2148-3372	
중 구	주차관리과	3396-6254	
용산구	교통지도과	2199-7800	
성북구	교통지도과	2241-3513	
광진구	교통지도과	450-7972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2127-4917	
중랑구	교통지도과	2094-2669	
성동구	교통지도과	2286-5727	
강북구	주차관리과	901-5965	
도봉구	교통지도과	2091-4204	
노원구	교통지도과	2116-4083	
은평구	교통지도과	351-7810	
서대문구	교통관리과	330-1866	
마포구	교통지도과	3153-9653	
양천구	교통지도과	2620-3747	
강서구	주차관리과	2600-4221	
구로구	주차관리과	860-3188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2670-3997	
동작구	교통지도과	820-9886	
관악구	교통지도과	879-6955	
서초구	주차관리과	2155-7248	
강남구	주차관리과	3423-6453	주차민원콜센터 1544-2113
송파구	주차관리과	2147-3207	
강동구	교통지도과	3425-6312	

[별표1] 금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별표2] 소형 화물차 단속 유예 구간



구분	도로명	제한속도	구분	도로명	제한속도
①	국도(국도) 1,900	①	지방도 10		
②	국도(국도) 1,300	②	국도 200		
③, ④	지방도(지방도) 1,000	③	지방도 100		
⑤, ⑥	지방도 500	④	지방도 100		
⑦	지방도 400	⑤	지방도 80		
⑧	지방도 300	⑥	지방도 60		
⑨	지방도 200	⑦	지방도 40		
⑩	지방도 100	⑧	지방도 30		
⑪	지방도 80	⑨	지방도 20		
⑫	지방도 60	⑩	지방도 10		
⑬	지방도 40	⑪	지방도 5		
⑭	지방도 30	⑫	지방도 3		
⑮	지방도 20	⑬	지방도 2		
⑯	지방도 10	⑭	지방도 1		
⑰	지방도 5	⑮	지방도 0.5		
⑱	지방도 3	⑯	지방도 0.3		
⑲	지방도 2	⑰	지방도 0.2		
⑳	지방도 1	⑱	지방도 0.1		
㉑	지방도 0.5	㉑	지방도 0.05		
㉒	지방도 0.3	㉒	지방도 0.03		
㉓	지방도 0.2	㉓	지방도 0.02		
㉔	지방도 0.1	㉔	지방도 0.01		
㉕	지방도 0.05	㉕	지방도 0.005		
㉖	지방도 0.03	㉖	지방도 0.003		
㉗	지방도 0.02	㉗	지방도 0.002		
㉘	지방도 0.01	㉘	지방도 0.001		
㉙	지방도 0.005	㉙	지방도 0.0005		
㉚	지방도 0.003	㉚	지방도 0.0003		
㉛	지방도 0.002	㉛	지방도 0.0002		
㉜	지방도 0.001	㉜	지방도 0.0001		
㉝	지방도 0.0005	㉝	지방도 0.00005		
㉞	지방도 0.0003	㉞	지방도 0.00003		
㉟	지방도 0.0002	㉟	지방도 0.00002		
㊱	지방도 0.0001	㊱	지방도 0.00001		
㊲	지방도 0.00005	㊲	지방도 0.000005		
㊳	지방도 0.00003	㊳	지방도 0.000003		
㊴	지방도 0.00002	㊴	지방도 0.000002		
㊵	지방도 0.00001	㊵	지방도 0.000001		

[본문으로 돌아가기](#)

[별표3] 고정형 CCTV 설치지역



[별표4] 어린이 보호구역



[별표5] 1.5톤이하 화물차량 주차허용 구간

연번	서별 (자치구)	도로명	기점(~에서)	종점(~까지)	연장(m)	폭(m)	차로수	비고
1	금천 (금천구)	발소길	시흥1동 113-156	시흥1동 123-12	430	7	1차로	편측
2	금천 (금천구)	목련길	시흥1동 117-2	시흥1동 998-2	180	6~8	1차로	편측
3	금천 (금천구)	금천구청역 길	시흥1동 113-81	시흥1동108-78	400	14	4차로(편도2)	편측
4	금천 (금천구)	문일길	시흥1동 992-47	시흥1동 192-45	100	14	4차로(편도2)	편측
5	금천 (금천구)	광장길	시흥1동 886-11	시흥1동 892-80	180	7	1차로	편측
6	금천 (금천구)	샘길	시흥1동 895-7	시흥1동 890-14	350	8	1차로	편측
7	금천 (금천구)	은행나무길	시흥1동 903-13	시흥1동 907-39	300	14	4차로(편도2)	편측
8	금천 (금천구)	샘 1길	시흥1동 904	시흥1동 902-33	150	8	1차로	편측
9	금천 (금천구)	향교1길	시흥2동 1013-7	시흥2동 244-58	170	6	1차로	편측
10	금천 (금천구)	향교길	시흥2동 262-6	시흥2동 263-1	70	7	1차로	편측
11	금천 (금천구)	향교길	시흥2동 244-58	시흥2동 241-7	100	7	1차로	편측
12	금천 (금천구)	탐골길	시흥2동 224-1	시흥2동 239-1	100	7	1차로	편측
13	금천 (금천구)	탐골길	시흥2동238-13	시흥2동 230-104	260	7	1차로	편측
14	금천 (금천구)	탐골길	시흥2동 1016-3	시흥2동 1010-12	80	8	1차로	편측
15	금천 (금천구)	실개천길	시흥3동 979-2	시흥3동 974-9	260	8	1차로	편측
16	금천 (금천구)	진달래공원 길	시흥3동 967-1	시흥3동 970-3	170	6	1차로	편측
17	금천 (금천구)	개미길	시흥3동 955-6	시흥3동 960-6	170	6	1차로	편측
18	금천 (금천구)	박미길	시흥3동 955	시흥3동 957-8	320	8	1차로	편측
19	금천 (금천구)	뚝방길	시흥3동 982-4	시흥3동 982	170	8	1차로	편측
20	금천 (금천구)	유통상가길	시흥3동 984	시흥3동 984-29	240	6	1차로	편측
21	금천 (금천구)	한울길	시흥3동 985-27	시흥3동 791-40	120	6	1차로	편측
22	금천 (금천구)	박미고개길	시흥3동 937	시흥3동 24-4	310	8	1차로	편측
23	금천 (금천구)	송록길	시흥4동802	시흥4동791-35	110	8	1차로	편측
24	금천 (금천구)	kun새재미길	시흥4동819	시흥4동817-67	200	7	1차로	편측
25	금천 (금천구)	단군길	시흥4동820	시흥4동169-51	320	6	1차로	편측
26	금천 (금천구)	버드나무길	시흥4동820-40	시흥4동823-69	240	6	1차로	편측

27	금천 (금천구)	산장길	시흥4동3-150	시흥4동3-3	200	7	1차로	편측
28	금천 (금천구)	효봉길	시흥4동796-1	시흥4동797-144	130	6	1차로	편측
29	금천 (금천구)	횡궁길	시흥5동270-2	시흥5동83-68	200	9	1차로	편측
30	금천 (금천구)	횡궁길	시흥5동270-36	시흥5동411-4	270	9	1차로	편측
31	금천 (금천구)	횡궁길	시흥5동929-2	시흥5동71-45	240	9	1차로	편측
32	금천 (금천구)	횡궁길	시흥5동932-22	시흥5동935-90	330	9	1차로	편측
33	금천 (금천구)	박미고개길	시흥5동935	시흥5동435-5	240	8	1차로	편측
34	금천 (금천구)	은행나무길	시흥5동921-32	시흥5동910-27	210	14	4차로(편도2)	편측
35	금천 (금천구)	별장길	시흥5동911	시흥5동917-36	200	8	1차로	편측
36	금천 (금천구)	모아래길	독산1동297-11	독산1동298-10	150	7	1차로	편측
37	금천 (금천구)	모아래길	독산1동301-25	독산1동336-23	600	7	1차로	편측
38	금천 (금천구)	두산2길	독산1동299-45	독산1동299-34	140	8	1차로	편측
39	금천 (금천구)	두산길	독산1동299-8	독산1동336-30	890	14	4차로(편도2)	편측
40	금천 (금천구)	두산5길	독산1동334-9	독산1동303-10	200	8	1차로	편측
41	금천 (금천구)	두산초등길	독산1동998-10	독산1동1005-5	430	8	1차로	편측
42	금천 (금천구)	작은말미길	독산1동1132-	독산1동1242-43	420	8	1차로	편측
43	금천 (금천구)	마차길	독산1동300-1	독산1동293-23	410	8	1차로	편측
44	금천 (금천구)	용주길	독산1동145-2	독산1동144-22	180	10	1차로	편측
45	금천 (금천구)	한내2길	독산1동1090	독산1동1088	390	10	1차로	편측
46	금천 (금천구)	정훈1길	독산2동391-91	독산2동377-5	350	6	1차로	편측
47	금천 (금천구)	금당길	독산2동1040-4	독산2동1043	150	6	1차로	편측
48	금천 (금천구)	도서관3길	독산2동1041-24	독산2동1040	180	6	1차로	편측
49	금천 (금천구)	호정길	독산2동1065-51	독산2동1065	60	6	1차로	편측
50	금천 (금천구)	시흥고개길	독산2동1076-47	독산2동1076	200	8	1차로	편측
51	금천 (금천구)	호정2길	독산2동1060	독산2동1067-4	170	8	1차로	편측
52	금천 (금천구)	호정1길	독산2동1060	독산2동1060-32	90	6	1차로	편측
53	금천 (금천구)	금당길	독산2동1055-20	독산2동1055-2	140	6	1차로	편측

54	금천 (금천구)	금당1길	독산2동1053-24	독산2동1053	190	6	1차로	편측
55	금천 (금천구)	가산로	독산3동159-23	독산3동178-7	400	14	4차로(편도2)	편측
56	금천 (금천구)	남문시장3 길	독산3동983-15	독산3동980-18	390	8	1차로	편측
57	금천 (금천구)	문성골길	독산3동974	독산3동907-18	580	14	1차로	편측
58	금천 (금천구)	목화길	독산3동950-7	독산3동876-17	160	6	1차로	편측
59	금천 (금천구)	개나리1길	독산3동900-17	독산3동901-12	375	6	1차로	편측
60	금천 (금천구)	구룡1길	독산3동951-4	독산3동952-10	250	6	1차로	편측
61	금천 (금천구)	구룡1길	독산3동953	독산3동954-4	240	6	1차로	편측
62	금천 (금천구)	구룡길	독산3동967-1	독산3동965-12	180	6	1차로	편측
63	금천 (금천구)	독산고개길	독산3동968	독산3동966-1	120	6	1차로	편측
64	금천 (금천구)	장미길	독산3동991	독산3동992-7	220	6	1차로	편측
65	금천 (금천구)	목화1길	독산3동899-17	독산3동899-10	100	6	1차로	편측
66	금천 (금천구)	우정4길	독산4동286-8	독산4동195-7	350	8	1차로	편측
67	금천 (금천구)	우정7길	독산4동1030	독산4동1023-1	320	8	1차로	편측
68	금천 (금천구)	우정길	독산4동1027-27	독산4동200-10	530	7	1차로	편측
69	금천 (금천구)	우정10길	독산4동1023-23	독산4동194-3	480	6	1차로	편측
70	금천 (금천구)	정심초등길	독산4동185-7	독산4동183-1	330	10	1차로	편측
71	금천 (금천구)	도서관길	독산4동929-7	독산4동938-5	380	6	1차로	편측
72	금천 (금천구)	체육공원길	독산4동938-5	독산4동918-7	350	6	1차로	편측
73	금천 (금천구)	감로천길	독산4동916	독산4동917	80	6	1차로	편측
74	금천 (금천구)	패션단지길	가산동60-8	가산동219-5	430	14	4차로(편도2)	편측
75	금천 (금천구)	백련길	가산동60-49	가산동143-27	580	14	4차로(편도2)	편측
76	금천 (금천구)	패션단지길	가산동60-22	가산동60-3	400	13	4차로(편도2)	편측
77	금천 (금천구)	패션단지길	가산동50-3	가산동60-11	180	13	4차로(편도2)	편측
78	금천 (금천구)	가산디지털 단지1길	가산동481-1	가산동371-17	1140	13	4차로(편도2)	편측
79	금천 (금천구)	가산디지털 단지2길	가산동533	가산동550-9	1100	13	4차로(편도2)	편측
80	금천 (금천구)	가산디지털 단지1길	가산동371-68	가산동680	121	13	4차로(편도2)	편측
81	금천 (금천구)	가산디지털 단지2길	가산동345-	가산동327-35	800	13	4차로(편도2)	편측

응급환자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관련)

1. 응급환자의 정의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응급환자의 기준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관련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3.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구 분	주요처리 기준	첨부서류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는 중복장애의 경우

※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 2012.6.8)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 발급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 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0.08.19 조례 제 621호

(일부개정) 2011.10.27 조례 제 6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03.18, 2011.10.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총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교통관련단체 임직원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03.18>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과 의결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3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제621호, 201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683호, 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안내 표지판종류

						
통행금지	자동차통행금지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이륜자동차및 원동기장치 자전거통행금지	자전거·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통행금지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진입금지	직진금지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유턴금지	앞지르기금지
						
정차·주차금지	주차금지	차중량제한	차높이제한	차폭제한	차간거리확보	최고속도제한
						
최저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	보행자보행금지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